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21

발의연월일: 2021. 2. 1.

발 의 자:서영교·김병기·김영배

김영호 · 양정숙 · 오영환

이규민 • 이동주 • 주철현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 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,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,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 움이 있고, 공공재개발·공공재건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생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공공도시 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, 중요 국책사업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 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사업의 목적·필요성·공 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22호 및 제47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공공도시정비사업

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 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 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 한한다)이 사업의 목적·필요성·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게 정 안
제2조(적용 범위) ① 이 법은 다	제2조(적용 범위) 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	
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	
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	
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	
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	
업"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	
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	
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	
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공공도시정비사업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	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
성 검토) ① (생략)	성 검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2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	
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	
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. 이 경	
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	
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	

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 른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
 재건축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
 체의 장(특별시장·광역시장·
 도지사에 한한다)이 사업의
 목적·필요성·공익성 등을 고
 려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
 다고 인정한 사업
- ③ (현행과 같음)